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888호 2012. 6. 12(화)

포항시보

◀ 조 려 ▶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97호) 2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98호) 4
-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99호) 7
-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제1100호) 9
-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01호) 12
-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102호) 18

◀ 입법예고 ▶

-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012-1053호) 22

◀ 공 고 ▶

-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제2012-7호) 40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제2012-1033호) 49
- 제188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제11호) 52

회 람									
--------	--	--	--	--	--	--	--	--	--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12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포항시 조례 제1097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한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p> <p>④ <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u>은 1일 1시간의 <u>육아시간</u>을 얻을 수 있다.</p> <p>⑤ ~ ⑨ (생 략)</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임신한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u>은 1일 1시간의 <u>육아 시간</u>을 얻을 수 있다.</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 아이 낳기 좋은 포항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고,
- 출산, 양육의 역할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부여되고 남성의 적극적인 양육 역할이 장려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부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축근무제(육아시간) 특별휴가제도 확대(안 제23조제4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 **임신한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12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098호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특례보증) ① <u>시장</u>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조(지원대상) ① (생략)</p> <p>1. ~ 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② <u>기타</u>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조(특례보증) ① <u>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그 밖에</u> ----- ----- -----</p>

1. 개정이유

- 고유가·인건비 상승 및 원재료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안정을 위하여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 모범업소**」에 대한 실질 인센티브 제공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지역진출 확대에 따른 골목 영세상권의 경영 악화를 일부 해소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 (안 제4조제2항)
- 나.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 (안 제4조제3항)
- 다.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수정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12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099호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를 “재화나 서비스(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등)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u>재화나 서비스</u>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p>	<p>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 -----<u>재화나 서비스(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등)</u>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1. 개정이유**
 시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18조1항중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한다” 를 “재화나 서비스(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등)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변경.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12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100호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5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정이유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함.
 - “공연장” 이라 함은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함.
 - “최적관람석” 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의 관람석을 말함.
 - “장애인보호자” 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함
-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100분의 50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안 제5조)
- 공연장 등의 운영자 및 행사주관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권장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은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함 (부칙 제2항)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12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101호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이하 “아이조아” 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1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아이조아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체험시설, 다목적홀,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아이조아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조아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
2.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3.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아이조아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을 통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아이조아의 시설 사용료 및 체험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 ② 다목적홀 사용자는 특별한 공연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⑤ 아이조아의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아이조아의 시설 및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연 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 2. 아이조아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 3. 체험 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그 외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조아 시설의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 1.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보육 행사
- 2. 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를 위한 교육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11조(운영 등) ① 아이조아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아이조아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기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아이조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아이조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민간위탁사무 중 “여성가족과”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관리·운영

【별표】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시설 사용료 및 체험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1.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시설의 사용료

시 설 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 고
다목적홀	일반행사	5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 퍼센트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행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함
	업무협약	협약에 의함	
부대시설 ○ 냉·난방 ○ 음향시설 프로젝터 조명		10,000원 1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료 가산은 공연장 사용료의 가산기준과 같음

2. 체험시설의 이용료

시설명	기준		이용료	비고
체험시설	어린이	개인	5,000원	1. 단체는 20명 이상임 2. 인솔교사는 무료
		단체	3,000원	
	보호자		3,000원	

1. 제정이유

어린이의 꿈과 재능을 키워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시설인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이조아 플라자 위치 :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15번지 일원(안 제2조)
- 나. 아이조아 플라자 시설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아이조아 플라자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아이조아 플라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러. 아이조아 플라자 운영 및 위탁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12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102호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포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 를 “포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하고, “문화예술과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를 “업무관련과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3인” 을 “3명” 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를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 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포항시 지명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생 략)</p> <p>1. (생 략)</p> <p>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p> <p>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④ (생 략)</p> <p>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제2조(구성) ① 포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업무 관련과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p> <p>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p> <p>-----3명</p> <p>3. 그 밖에 -----</p> <p>---</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1명----</p> <p>-----</p>
<p>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제3조(임기) -----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기능) (생 략)</p> <p>1. ~ 2. (생 략)</p> <p>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p>	<p>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p>
<p>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행규칙) ----- -----그 밖에 ----- -----</p>

1. 개정이유

역사와 문화의 변천과정에서 지명이 생성·변경·소멸을 반복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하고, 현재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명의 통일을 기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형도에 정확히 표기 하여 바른 지명을 사용토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지명위원회 관련법령이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1053호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제도는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존재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로 변경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 정비
 - 재래시장 ⇒ 전통시장
 - 시장 ⇒ 시장(市場)
 -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 다.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관련법령에 따르도록 함
 - 제41부터 제45조까지를 삭제

3.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2년 6월 11일 ~ 7월 1일

6. 의견제출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7.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경제노동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경제노동과(포항시 남구 시청로1)
 - 전화 054) 270-2433, 팩스 270-2479, 이메일 hosean@korea.kr
-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를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제 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시장 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조 본문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인” 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市場)” 이라 한다),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市場)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市場)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市場)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시시장”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포항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市場) 또는 시장에게 등록된 시장(市場)을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시장·시장활성구역 또는 상점가” 를 “시장(市場),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재래시장” 을 “전통시장” 으로 하며, “시장·시장활성구역 및 상점가” 를 “시장(市場),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8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대표하는 자” 를 “시장(市場)을 대표하는 사람”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의 시설물” 을 “시장(市場)의 시설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활성화사업” 을 “시장(市場) 활성화사업” 으로 하며, 제3항 중 “시장에 설치된” 을 “시장(市場)에 설치된” 으로 하며 “재래시장” 을 “전통시장”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장 또는” 을 “시장(市場) 또는”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래시장” 을 “전통시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으로” 를 “시장(市場)으로” 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가목 내지 마목” 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로 한다.

제3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 제목과 본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시장”을 “시장(市場)”으로 한다.

제12조 제목과 본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시장”을 “시장(市場)”으로 한다.

제13조 제목과 본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과 본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시장에 준하여”를 “시장(市場)에 준하여”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하는 자(시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하는 사람(시장(市場)은 제외한다)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시장의 기능”을 “시장(市場)의 기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를 “시장(市場),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시장(市場)”으로 하며,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을 하는 사람”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공보”를 “시보”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시장”을 “시장(市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5조 내지 제29조”를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를 “시장(市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市場) 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市場) 관리업무”로 “시장 관리에”를 “시장(市場) 관리에”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를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市場),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시장의 소유”를 “시장(市場)의 소유”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시장의”를 “시장(市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를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市場),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市場),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재래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8항에 따른 상인 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4항에 따 	<p>제명 :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상권 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 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p><u>른 시장 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u></p> <p>6.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5조 제3항에 따른 <u>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7.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9조 제3항에 따른 <u>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u></p> <p>8.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35조 제4항 <u>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u>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9. <u>그 밖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p>	<p><u>시장 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u></p> <p>6.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5조제3항에 따른 <u>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7.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9조제3항에 따른 <u>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u></p> <p>8.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35조 <u>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u>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9. <u>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상인</u>”이라 함은 <u>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u></p>	<p>제2조(정의)----- ---뜻은 --- 1. “<u>상인</u>”이란 <u>전통시장(이하 “시장(市場)”이라 한다),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市場)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市場)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市場)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2. (생 략)</p> <p>3. “<u>임시시장</u>” 이라 함은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p> <p>4. (생 략)</p> <p>5. “<u>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u>” (이하 “<u>시설물</u>” 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u>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u>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p> <p>6. (생 략)</p> <p>7. “<u>상인회</u>” 라 함은 법 제65조 및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u>」 (이하 “<u>규칙</u>” 이라한다) 제12조에 따라 <u>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조직 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p> <p>8.(생 략)</p> <p>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u>유통산업발전법</u>」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u>임시시장</u>” 이란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u>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u>이 개설한 시장(市場) 또는 시장에게 등록한 시장(市場)을 말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5. ----- ----- ----- ----- ----- <u>시장(市場),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u> ----- -----</p> <p>6. (현행과 같음)</p> <p>7. ----- -----<u>전통시장</u> ----- ----- ----- <u>시장(市場),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u> ----- ----- -----</p> <p>8.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구역) ① ----- ----- ----- -----<u>제8조에 따라</u> ----- ----- -----</p>

현 행	개 정 안
<p>2. ~ 3. (생 략) ② (생 략)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p> <p>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 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p> <p>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 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p> <p>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u>시장활성화</u>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p> <p>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은 <u>시장활성화</u>구역을 <u>시장</u>에 준하여 관리한다.</p> <p>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p>	<p>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p> <p>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 활성화구역은-----<u>시장(市場)</u> -----<u>시장(市場)</u> -----</p> <p>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 활성화구역-----<u>시장(市場)</u>----- ----- <u>시장(市場)</u> -----</p> <p>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 ----- <u>상권활성화</u>구역-----</p> <p>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u>상권활성화</u>--<u>시장(市場)</u>에 준하여-----</p> <p>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p>

현 행	개 정 안
<p>③ (생 략)</p> <p>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생 략)</p> <p>1. <u>시장</u>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 사항</p> <p>2. (생 략)</p> <p>② (생 략)</p> <p>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p> <p>2. <u>매 회계연도</u> 결산현황 및 자산 관리현황</p> <p>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u>시장의 특성에 따라</u>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p> <p>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u>시장</u>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u>시장</u>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시장관리</u>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p> <p>1. <u>시장(市場)</u>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u>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u>-----</p> <p>2. <u>회계연도</u> -----</p> <p>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시장(市場)의 특성에 따라</u> 해당 업무 -----</p> <p>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p> <p>① ----- -----<u>시장(市場) 관리업무</u> -----</p> <p>② -----<u>시장(市場)</u> 관리업무----- -----<u>시장(市場) 관리</u>에 -----</p>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 ----- ---- 시장(市場),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p> <p>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 제3항에 의한다.</p>	<p><삭제></p>
<p>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p> <p>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삭제〉</p>
<p>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p> <p>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p>	<p>〈삭제〉</p>
<p>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포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p>	<p>〈삭제〉</p>
<p>별지 제1호 서식 - 과태료 처분 통지서</p>	<p>〈삭제〉</p>
<p>별지 제2호 서식 - 독촉 통지서</p>	<p>〈삭제〉</p>
<p>별지 제3호 서식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p>	<p>〈삭제〉</p>
<p>별지 제4호 서식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p>	<p>〈삭제〉</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공 고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12-7호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2012년도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내역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시각디자인	전임 “다” 급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물 디자인 조정 및 개발 홍보물 가이드라인 구축 홍보물 제작 및 지원 도시이미지안 제작
민·관·군 협력	시간제 “가” 급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군부대와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자문 포항지역 군부대 지원대상 사업 발굴 및 자문 군협의 업무수행 체계 개선 및 군부대 관련사항 협의 현안사항에 대한 관련법령 해석 및 절차 수행
속기사	전임 “마” 급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의회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지원

2. 채용(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항목의 요건을 갖춘 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시각디자인 (전임 “다”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구 분	자 격 기 준
시각디자인 (전임 “다”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민·관·군협력 (시간제 “가”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업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관련업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업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민관군협력, 안보정책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 12년 이상 민관군협력, 안보정책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민관군협력, 안보정책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군 예비역의 경우 영관급이상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속기사 (전임 “마”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연령 및 거주지

- 연 령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 제한없음

4. 채용(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업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내 연장 가능)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6. 응시원서 접수

- 접 수 기 간 : 2012. 6. 18(월) ~ 6. 20(수) 18:00까지 (3일간)
- 원서 접수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054-270-2083)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7. 시험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2012. 6. 25(월),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시 : 2012. 6. 29(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7. 5(목),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8. 보수 및 복무

- 연 봉
 - 시각디자인 분야 (전임 “다” 급) : 34,447천원
 - 민관군 협력 분야 (시간제 “가” 급) : 22,675천원
 - 속기 분야 (전임 “마” 급) : 15,458천원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근무시간
 - 시각디자인 분야 (전임 “다” 급) : 주 40시간
 - 민·관·군 협력 분야 (시간제 “가” 급) : 주 24시간
 - 속기 분야 (전임 “마” 급) : 주 40시간
- 복 무 : 기타 복무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준용

9. 제출서류

- 응시원서1부 (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cm) 2매
 - 응시수수료 : 10,000원(가급)/7,000원(다)/5,000원(마)상당의 포항시수입증지 부착
- 이력서 1부(학력, 자격, 경력, 상훈 등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최근 5년 이내 전·출입사항 및 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등 입증서류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10.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원서는 공고문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면접시험장에 참석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054-270-208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홈페이지(www.ipohang.org)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응시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분야" 를 기재
 - ② **전화** : 상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휴대폰 등)
 - ③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 ④ **주요경력** : 당해분야 경력증명서 제출한 경력만 인정
 - ⑤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 ⑥ 수입증지란에는 10,000원(가급)/7,000원(다급)/5,000원(마급) 상당의 포항시 수입증지를 첨부 (수입증지는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판매)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성 명 :

2012.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예)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포항시 공고 제 2012-1033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6월 7일

포항시장 박승호

1. 공고기간 : 2012. 6. 8 ~ 2012. 6. 27 (20일간)
2. 폐차장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제재활용사업체 - 붙임 내역서 참조
3. 폐차예정일 : 2012. 6. 28 부터
4. 문의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6. 강제처리대상차량 : 63년6045호 외 5대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총건수 : 6 ◆ 공고기간 : 2012-06-08에서 2012-06-27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차명	주 소	발치장소		이해관계
				차량번호	모관장소	
2012-63	63년6045	쏘나타 1112-000HC	경북 포항시 남구 문예로40번길 25-1 (해동동)	포항시 북구 환호동 498-2 다에어린이집 인근 이면도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교통행정과 - 주차차 위반 6 ⇒ 남북 건설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 모함 5, 재판법 2, 손배법 16 ● 포항시남구 세무과 - 지방세 체납 3 ● 포항시북구 세무과 - 지방세 체납 건설교통과 - 주차차위반 8 ● 경주시 교통행정과 - 주차차위반 (2001-1608) ● 서울 강동구 교통과 - 주차차(2001-12-104981, 2002-01-104589) ● 서울 서초구 교통과 - 주차차위반(2001-08-105194) ● 부산 수영구 교통과 - 주차차위반(1999-12019) ● 인천 연수구 차량민원과 - 주차차위반(2006-12-102166) ● 고양 일신동구 교통과 - 주차차위반(2002-02-104060) ● 고양 일산서구 교통과 - 주차차위반(2002-02-104060) ●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과태료체납 3 ●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무인단속 등 13 ● 포항세무서 소득 - 부가가치세 체납('98.9.29.) ●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남부지사 - 건보료체납('00.12.22.) ● 대구포항지원 99가단7074 - 도영회(경기 오산시 갈곶동) '99.6.25. 	
2012-65	림두수	610210-*****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2길 16-8, 101동 2020호 (윤성모닝타운) 사용본거지 : 대구 달서구 웰성동 235	포항시 남구 상도동 603-12 고려기전열 도로 (주)태경ENG종합폐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북구 건설교통과 - 주차차위반(2011-027303) ● 대구 달서구 징수과 - 지방세체납 6 교통과 - 경사지연(10년4월체납) ● 고양시 일산동구 교통안전과 - 주차차위반(2008-07-103701) ● 영진경찰서 경비교통과 - 도로교통법위반 등 57건 ●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 - 과태료 체납 2 	
2012-68	임종하(신도자 동차상사)	510522-*****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산단 로130번길 207-16 (스틸에이지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 리 51-2 흥해향토정년회 앞 도로 대원오토D&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 의무보험과태료체납 6 ● 포항시남구 건설교통과 - 주차차위반(2008-13514, 2009-016907) ● 경주시 교통행정과 - 의무보험 4, 경사지연 1 세정과 - 지방세체납('11.2.28.) 전북면 - 지방세체납('10.2.11.) ●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과태료체납 등 5건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총건수 : 6 ◆ 공고기간 : 2012-06-08에서 2012-06-27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명	차명	주민번호	주소	방치장소		이해관계
						방치장소	모관장소	
2012-71	50조1608	(유)상길모터스	다이너지티 3.0오토메틱 택시	613-81-*****	경기 광명시 광명로 877, 101동 1505호 (광명동, 한진아파트) 사용본거지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촌리 735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신광경계 68번 지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 - 주차요금('06.1.23.) ● 대구 중구 교통과 - 주차차위반(2001-106779) ● 대구 동구 교통과 - 순배반 2, 주차차위반 2 ● 대구 남구 교통과 - 주차차위반 3 ● 경산시 교통행정과 - 등록위반과태료 1, 책임보험 12 ●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속도위반 등 9건 ● 경산경찰서 경비교통과 - 과태료체납 등 12 ● 대구시질관리공단 - 주차요금('04.3.30.) ■ 담당 : 기아자동차판매(주) '98.3.11. ⇒ 기아자동차(주) 	
2012-80	95루5982	(주)아이엘	포터슈퍼캠	680114-*****	경북 포항시 북구 상흥로18번길 17, 103호 (장성동, 영보맨션) 사용본거지 : 포항시 북구 서동로 94 (여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남구 대도동 4-8 보은매트로타워앞 도로 ● 포항시 남구 대도동 4-8 보은매트로타워앞 도로 ● 포항시 북구 세우과 - 지방세체납('10.8.23.) 복지환경위생과 - 환경개선부담금 12건 건설교통과 - 주차차위반(2006-22387,33089) ● 울산 중구 환경위생과 - 환경개선부담금('04.12.21.) ● 강릉시 교통행정과 - 주차차위반과태료체납 3건 		
2012-82	32수9520	임종찬	매그너스경찰차	860505-*****	경북 구미시 인동48길 34, 303호 (구평동, 태양하이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 세우과 - 지방세체납('11.9.7.) ●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 - 과태료(2010-0642747,대:04머8931) ● 국민간경보항공단 구미지사 - 체납('12.4.24.) ■ 담당 : 현대캐피탈(주) '11.2.16. -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포항시의회 공고 제11호

제188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88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2년 6월 20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2년 6월 11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상 구